

영상물등급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

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·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·선전물에 대한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(이하 “영화비디오법”）」 제7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입니다.

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「영화비디오법」 제79조에 의거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위촉 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5월 6일

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

1. 모집분야

모집분야	인원	회의장소	위촉기간
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	○명	부산	위촉일로부터 1년
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	○명	부산/서울	
광고물소위원회 위원	○명	부산	
공연추천소위원회 위원	○명	부산	

※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회의는 (부산)위원회 청사와 (서울)영상회의실에서 동시 진행

【위원회 청사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, 3층

【위원회 서울 영상회의실】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, 단암타워 23층

2. 모집분야 업무

분 야	업 무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영화 등급분류 소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임무: 「영화비디오법」 제29조에 의한 영화 상영등급분류 등 ▪ 결정사항: 영화 등급결정(전체관람가, 12세이상관람가, 15세이상관람가, 청소년관람불가, 제한상영가) ▪ 회의 개최횟수: 주 3회(월, 화, 수) 개최 ※ 1회 약 4시간 내외 소요 * 검토안건에 따라 개최일이 증감(휴회 및 증회)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 ▪ 회의 장소: (부산) 위원회 청사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디오물 등급분류 소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임무: 「영화비디오법」 제50조에 의한 국내외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등 ▪ 결정사항: 국내외 비디오물 등급결정(전체관람가, 12세이상관람가, 15세 이상관람가, 청소년관람불가, 제한관람가) ▪ 회의 개최횟수: 주 4회(월, 화, 목, 금) 개최 ※ 1회 약 4시간 내외 소요 * 검토안건에 따라 개최일이 증감(휴회 및 증회)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 ▪ 회의 장소: (부산) 위원회 청사와 (서울) 영상회의실에서 동시 진행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광고물 소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임무: 「영화비디오법」 제29조에 의한 영화 예고편 및 광고영화 상영 등급분류, 같은 법 제32조 및 제66조에 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 에 관한 광고·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 ▪ 회의 개최횟수: 주 4회(월, 화, 목, 금) 개최 ※ 1회 약 3시간 내외 소요 * 검토안건에 따라 개최일이 증감(휴회 및 증회)하거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. * 부산 이외 원격지 거주자는 주 1회 왕복 교통비를 제외한 숙박비 및 이동경비를 지원하지 않음. ▪ 회의 장소: (부산) 위원회 청사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연추천 소위원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주요임무: 「공연법」 제6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48조 제2항에 의한 공연물의 추천 및 변경추천, 「공연법」 제5조에 의한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▪ 결정사항: 외국인 공연자의 자질(가창력, 전문성 등)을 확인하여 공연추천 여부 결정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▪ 회의 개최횟수: 주 1회(화) 개최 ※ 1회 약 3시간 내외 소요, 필요시 증회 가능 ▪ 회의 장소: (부산) 위원회 청사

3. 지원 자격

□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가운데 등급분류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

- 영상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- 교육·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- 언론·법조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- 청소년·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
- 기타 등급분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하였거나,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

□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민간단체에서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가능함

※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추천 시 유의사항

- 소위원회 위원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·사회 민간단체의 **단체별 추천 인수는 1인 이내임**
-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·사회 민간단체는 분야별 소위원회 업무, 회의 개최 횟수 등을 참고하여,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갖춘 적격 인사를 추천하여야 함
- 소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비영리 시민·사회 민간단체는 **공문으로 추천**하여야 함. 추천 시 **[붙임1] 단체소개서** 서식에 단체 일반사항과 주요 사업 실적 등을 기재하여, 이를 지원자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하여야 함

4. 결격사유

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음

- 「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」 제6조(위원의 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

「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」 제6조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공무원(「교육공무원법」에 의한 교육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)
2. 「정당법」에 의한 당원
3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- 등급분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현업에 종사하는 자
- 개인 업무로 인해 등급분류 등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- 기타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

5.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

가. 공고기간: 2026. 5. 6.(수) ~ 5. 20.(수), 15일간

나. 모집기간: 2026. 5. 7.(목) 00:00 ~ 5. 20.(수) 18:00, 14일간

다. 접수방법: 위원회 채용홈페이지(<https://k mrb.recruiter.co.kr>)를 통한
온라인 서류접수

※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다른 위촉 공모와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다만, 소위원회 분야(영화, 비디오물, 광고물, 공연추천)에 한정하여 2지망까지
선택 지원 가능합니다.

(예시: 1지망-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, 2지망-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)

※ 서류접수 전 반드시 지원 분야의 회의 개최횟수, 장소 및 회의당 소요시간 등
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제출서류

제출시기	제출서류
지원 시	<p><위원회 채용홈페이지(https://k mrb.recruiter.co.kr)를 통한 온라인 서류접수></p> <p>1. 필수 첨부서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경력증명서(온라인 서류접수에 기재한 각 경력사항에 대한 증명서) 1부. ▪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1부. (붙임2 양식) <p>2. 해당자에 한함(기관·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단체소개서 1부. (붙임1 양식) ▪ 기관·단체장의 추천서 1부. (공문 형식) <p>※ 상세내용 공고문 3번의 '유관기관 및 단체 등 추천 시 유의사항' 참조</p>
위촉 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본증명서(상세)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최종 학력증명서 각 1부. ▪ 직무윤리서약서, 결격사유 확인서 등 각 1부. (지정 양식)

※ 경력·학력증명서 및 추천서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·변조할 경우 위원 위촉 취소 가능함.

7. 위촉절차

□ (위촉방법)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위촉 검증과정을 거쳐 선정 및 위촉 예정

□ (위원예우) 위원 위촉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예산 내에서 참석수당 지급

□ (위촉자공고) 위촉 대상자 명단은 위촉 절차를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

※ 위촉에서 제외된 지원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

□ (위 촉 후) 위촉 대상자에 한해 위원회 업무 관련 오리엔테이션 및 반부패·청렴
교육 진행 예정 ※ 위촉 대상자 전원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의무 참석

8. 기타사항

- **분야별 소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이며, 등급분류의 공정성과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.** 그 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문성과 구성 성비, 연령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을 위촉합니다.

- **임기 중일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.**
 1. 등급분류 등의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현저하게 성실성, 공정성,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될 때
 2. 위원회의 명예와 권위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
 3. 관련 업계와의 특별한 관계로 등급분류 등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한 때
 4. 부득이한 사유 없이 3개월 평균 참석률이 1/2 미만일 때
 5. 「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」 제2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불공정한 심의·의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때

- **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일반인 신분이지만 「영화비디오법」 제91조 제3호에 따라 「형법」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.**

【붙임1 양식】

단 체 소 개 서

* 해당 단체의 추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일 반 사 항	단 체 명			
	대 표 자		임 원 수 (상근자수)	
	주 소 및 연 락 처		전 화	
			F A X	
			홈페이지	
	설립목적		설립일자	
			정관유무	
회원규모		예산현황		
주 요 사 업 실 적	기구현황			
	2025년 주요사업실적			
	2026년 주요사업계획			
	단체연혁			
	기타사항 (논문, 출판, 수상내역 등)			

